

## < 변경 대비표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 : 유리카리아성장&배당증권투자신탁[주식]
2. 변경시행일 : 2020.05.12
3. 주요 정정사항 : 모투자신탁 추가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**[신탁계약서] : 모투자신탁 추가 및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**

정정 전	정정 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 ③ <생략>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생략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 ⑤ <생략>	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① ~③ <현행과 같음> ④ 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<현행과 같음> 2. <u>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</u> ⑤ <현행과 같음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제 39 조의 2(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의 50%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 다만,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인 경우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각각의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한다.
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생략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제44조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 ~ ③ <현행과 같음> ④ <u>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변경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 변경시행일 전일의 이 투자신탁 순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180일 분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업자 보수 또는 신탁업자보수를 신탁계약 변경시행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.</u> 1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의 법령·신탁계약·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</u> 2. <u>집합투자업자,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</u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이 신탁계약은 2020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</p>

**[투자설명서] : 모투자신탁 추가**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	
요약정보	-	모투자신탁 추가 -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2020.05.12 : 모투자신탁 추가 (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)
5. 운용전문인력		기준일 변경에 따른 업데이트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. 모자형 구조	-	모투자신탁 추가 -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-	모투자신탁 추가
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	-	모투자신탁 추가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요약정보	-	모투자신탁 추가 - 유리힘찬성장주증권모투자신탁[주식]

<끝>.